

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 - 2호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7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 나. 어촌계장을 어항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어항의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해석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어항관리청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3항)
 - 어촌계장을 어항관리책임자로 지정
- 다.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2. 7. ~ 2025. 2. 13.(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6067,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2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된 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자를 말한다.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항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지도
2. 어항시설을 항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제4조(종전의 제3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장을 어항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 및 제8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자단체등”을 “이용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항의 환경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된 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제4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군수

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
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
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
용 또는 수익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
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장을 어항관리책
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2

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
른 이용자단체 등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어항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급
지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
록 현장지도

2. 어항시설을 항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삭제>

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용자 단체 등은 시설의 기능이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 제7조 (생략)

제9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항시설에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보수·보강한 후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할어항 조사실시)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9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 제8조-----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자단체 등 -----

제14조(관할어항 조사실시) ① --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4. (생략)

② ~ ④ (생략)

제25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나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략)

제33조(협회의 기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9조

3.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5호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협회의 기능)

1.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
한 사항

2. (생략)

3. 어항의 환경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생략)

1. ----- 관
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어항의 환경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